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2

관세청고시 제2006- 16호(2006. 3. 2)
관세청고시 제2006- 36호(2006. 9. 1)
관세청고시 제2007- 14호(2007. 6. 1)
관세청고시 제2008- 21호(2008. 7.15)
관세청고시 제2009- 2호(2009. 1.26)
관세청고시 제2009- 67호(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 21호(2010. 2.10)
관세청고시 제2010- 86호(2010. 3.29)
관세청고시 제2010- 81호(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2- 21호(2012.10. 4)
관세청고시 제2013- 45호(2013. 5.31)
관세청고시 제2013- 50호(2013. 6.11)
관세청고시 제2013- 72호(2013.10.11)
관세청고시 제2014- 14호(2014. 1.24)
관세청고시 제2014- 42호(2014. 4.24)
관세청고시 제2014-103호(2014.11.2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5- 68호(2015.12.29)
(전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6- 63호(2016.12.27)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7- 79호(2017.12.29)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12.2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1- 84호(2021.12.3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2- 17호(2022. 5. 6)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2- 58호(2022.12. 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3- 37호(2023. 4.27)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4- 14호(2024. 3.29)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4- 72호(2024.12.23)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5- 34호(2025. 6.3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6- 2호(2026. 1. 5)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6- 2호(2026. 1. 5)
(일괄개정)관세청고시 제2026- 30호(2026. 4. 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6- 42호(2026. 6.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지정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⑦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

⑥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제17조의2(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해제)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
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협정·원산지·품목번호·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

③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⑦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2.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

⑧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9.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10.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11. 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8. 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9.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5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10. 에콰도르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따른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규칙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1부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9.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제12란(Certification)에 날인
10.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11. 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 캄보디아와의 협정
6. 필리핀과의 협정
7.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 제6란(Remarks)에 "대체(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발행번호)"를 추가로 기재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발급기관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5. 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

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사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삭 제>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제51조 <삭 제>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 <삭 제>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79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 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8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 제34조제3항제6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7호, 제2항제6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7호(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8호(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제8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 단서, 제17조제7항,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37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14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72호(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필리핀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2호(202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34조3항제10호, 제35조제4항제7호, 별표 3의 개정규정(각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34조제3항제11호, 별표 3의 개정규정(각각 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에콰도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30호(2026.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42호(2026.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별표 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 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 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 2의2]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1.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품목분류 확인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	1902.19-1000	국수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2	1902.19-2000	당면	감자나 고구마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면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3	1902.19-3000	냉면	전분(감자·고구마) 가루에 메밀가루나 칡가루 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면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	1902.30-1010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긴 즉석식품 <제외대상>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무척추동물이나 이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탕(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면발(제1902호)을 공급받아 생산시 적용 제외

			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과자 <제외대상> -제1905.31호 스위트 비스킷*과 구분 * 가루, 설탕, 지방, 감미료 등 함량이 전 중량의 50% 이상인 것(전중량 설탕 10% 이상, 전중량 지방35% 이하, 완제품의 수분12% 이상) -단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생지는 제1901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가루 반죽을 공급받아 생산 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적용제외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곡물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탕)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가루 반죽을 공급받아 생산 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제외
7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8	2008.99-5010	김	김에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제12류 해초류(김)에 기름·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는 공정을	'20년 HSK 변경(개정)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거쳐 생산 굽기(Roast)등가공공정필수	(제2106호 → 제2008호)
9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커피 농축액을 건조·분말화한 즉석커피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9류 커피원두를 볶아서 커피 농축액을 추출한 후 동결 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커피 농축액 추출 공정은 필수	인스턴트 커피(제2101호) 에 볶은 원두 커피 분말(제0901호)을 단순 혼합한 경우는 적용 제외
1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스프	가열 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한 후 조제가공하고, 가열성형 이후 동결건조 작업을 통해 생산	
11	2206.00-2010	청주	쌀과 쌀 누룩 등을 원료로 저온 발효 및 숙성하여 만든 청주 <제외대상> -전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누룩으로 곡물을 당화, 발효시켜 탁주를 담근 후, 침천시켜 거른 후 제성·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곡물의 당화, 발효공정 필수
12	2206.00-2030	탁주	정제수, 쌀, 국, 산도조절제, 효모를 원재료로 하여 담금 공정과 발효 및 제성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막걸리 <제외대상> -전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곡물 등 전분질 원료에 누룩,효모,물 등을 첨가해 발효시켜 생산	곡물의 당화, 발효공정 필수
13	2208.90-4000	소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14	2209.00-1000	양조 식초	분말과 농축액 등을 혼합·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 -"알코올의 용량"은 섭씨20도에서의 알코올 용량에 해당하는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맥아엑기스 등의 원료를 투입해 가당(당화)·알코올발효·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CC(2단위 변경) 경우 투입원지하수나 수돗물은 국내에서 채수(綵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15	2503.00-0000	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제외]	탈황공정을 통해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이나 증류하여 정제된 고체 또는 분말상태의 황 <제외대상> -승화황,침강황,콜로이드황(제2802호) -살충제 등 소매포장 형태로 제조된 것(제3808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탈황 공정을 통해 황을 생산	
16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석회석, 납석 및 규석을 조쇄한 후 혼합 · 소성한 백색(White) 시멘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석회석 등의 원료를 분쇄·소성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소성(firing) 공정 필수
17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산화알루미늄과 석회석을 혼합, 소성, 클링커 냉각 및 분쇄하여 만든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료를 혼합하고 분쇄하여 클린커로 만든 후, 소성작업을 통해 생산	
18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19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등유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생산시 적용 제외
20	2710.19-3000	경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원유가 아닌 석유조제품(제2710호)을 재료로 사용시 적용 제외
21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기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의 원료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 과정에서 추출되며, 정제공정, 수소첨가 분해 또는 탈왁스(Dewaxing) 공정 등을 거쳐 생산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시 적용 제외 예시)제2710.19-5010호의 조유를 원재료로 제2710.19-5010호의 윤활기유를 생산
22	2713.20-0000	석유역청(瀝青)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액체나 반고체 상태의 석유화합물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를 정제·감압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원유의 증류(distillation) 공정은 필수	천연아스팔트는 제2714호
23	2803.00-9011	카본블랙의 이차전지 제조용	흑색 미세 분말상의 카본블랙으로서 2차전지 전극제조용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를 반응로 및 포집공정 및 불순물 제거 과정을 통해 건조하여 제조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24	2815.20 -0000	수산화칼륨 [가성(苛性) 칼륨]	KOH·가성(苛性) 칼륨 (CASnumber1310 -58-3)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염화칼륨과 물을 용해조에 넣은 후 반응조를 통해 전기분해하고 가성칼륨이 되면, 농축기에 담아 증발시켜 완제품을 생산	
25	2817.00 -1000	산화아연	물에 녹지 않는 무색의 결정으로 ZnO (CAS number 1314-13-2)로 표기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료를 산화·분급과정을 거쳐 생산	
26	2833.24 -0000	황산니켈	전해 니켈도금·염색의 매염제·가스마스크 제조와 촉매에 사용되는 황산니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해·여과·추출·결정화 공정을 거쳐 생산	
27	2902.20 -0000	벤젠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분자식 : C6H6 -CASNO.71-43-2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28	2902.30 -0000	톨루엔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C6H5CH3 -CAS NO.108-88-3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 (제27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콜타르를 고온증류해서 추출한 나프타(제2707호)나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29	2902.43 -0000	파라-크실렌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C8H10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CAS NO.71-43-2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 (제2707호)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30	2909.43 -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페인트나 잉크의 용제, 세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CAS NO.112-07-2)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CAS NO.112-34-5)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부탄올(제2905.13호)과 에틸렌옥사이드(제2910.10호)를 주요원재료로 합성, 숙성, 정제/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31	2915.70 -2040	스테아르산아연	스테아르산, 팔미산과 아연의 화합물로 C36H70O4Zn (CAS number 557-05-1)로 표기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화학적 반응을 시킨 후 건조 및 분쇄과정을 통해 제조	
32	2917.14 -0000	무수말레산	무색 바늘 결정 모양으로 가소제, 폴리에스터수지, 알키드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 (CAS NO. 108-31-6)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1.벤젠(제2902호)을 산화바나듐의 촉매하에 400~500°C에서 공기산화시켜 생산 2.부탄(제2711호) 또는 PA(PhthalicAnhydride)제조시 발생한 부산물을 정제하여생산	말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33	2917.35 -0000	무수프탈산	무색바늘결정 모양으로 프탈산가소제나 도료,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CASNO.85-44-9)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크실렌(제2902호)을 산화바나듐, 촉매 등을 이용하여 산화하여 생산	단순히 프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34	2917.36 -1000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섬유, PET수지, 필름도료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크실렌(제2902호)을 주원료로 산화, 정제, 분리,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	

			NO.100-21-0)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35	2917.37 -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테레프탈산에 있는 2개의 카복시기의 각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바뀐 에스터 • CAS NO.120-61-6 • 화학식: C10H10O4 • 용도: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나 필름 등의 원료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 정제하여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메탄올에스테르화 공정을 통해 제조	테레프탈산(제2917.36호)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제2917.37호)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36	2917.39 -1000	이소프탈산	프탈산과 테레프탈산의 이성질체인 무맥결정의 방향족 화합물로 알키드수지·폴리에스터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CAS NO.121-91-5)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방향족 탄화수소인 m-자일렌(제2902호)을 산화하여 생산	
37	2929.10 -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섬유, PET수지, 필름도료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 NO.584-84-9)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톨루엔(제2902호)을 니트로화 시켜 디니트로 톨루엔(제2904호)을 제조하고 수소반응 시켜 생산	
38	3005.10 -9000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 의료용품(소매포장 형태의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섬유나 플라스틱 재료에 약물 등을 도포한 후 일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생산 -의료용품특성이 부여되는 공정필수	약물이 도포되지 않은 경우 제품 표시사항 등에 의료용으로 식별되는 것
39	3207.30 -4000	은으로 만든 액체 상태의 러스터(lustre)	은 플레이크, 레진,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주요 원료를 교반공정을 통해 생산 후, 여과공정을 거친 후 제조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40	3212.10 -0000	스탬프용 박(箔)	피소재에 전사하는 방법으로 인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 <제외대상> -안료등이 없는 금속박 등은 제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투명플라스틱(PET, OPP 등) 필름에 글루 등과 결합시킨 안료나 금속가루 등을 증착, 접합하여 생산	
41	3214.10 -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 시멘트	실리콘 수지를 원료로 한 매스틱 혹은 시멘트로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등 <제외대상> -제2520호·제2522호·제2523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터(plaster)·석회와 시멘트 -아스팔트제의 매스틱과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제2715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배합·충전·검사 등 공정을 거쳐 생산	
42	3215.11 -0000	인쇄용 잉크(흑색)	<제외대상> -포토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너(제37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유기착색제 등을 용제나 수지 등에 섞어 만든 전색제에 개어 미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를 공급받아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43	3215.19 -0000	인쇄용 잉크(흑색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포토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너(제37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유기착색제 등을 용제나 수지 등에 섞어 만든 전색제에 개어 미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를 공급받아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44	3303.00-1000	향수	액체 화장품으로 신체 및 의상에 뿌리는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하여 냉각 후 향료 등을 조합하여 알코올에 분해한 후 냉장 등의 숙성 작업을 통해 제조	
45	3304.10-1000	립스틱	유성의 고상 형태의 립스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해·혼합(교반)·탈포·냉각·충진·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6	3304.20-1000	아이섀도	눈화장용 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칭량·교반·타정·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 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47	3304.20-9000	마스카라	눈화장용 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해·교반·분산·탈포·냉각·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 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48	3304.30-1000	네일에나멜	손톱에 칠하여 반짝거리게 하는 화장품으로 매니큐어나 페디큐어에 이용 <제외대상>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구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칭량·배합·포장·검사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 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제

			재료에 따라 분류)			
49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피부색과 잡티 보정을 위해 얼굴에 바르는 가루타입의 화장품 <제외대상>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 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칭량·배합·필터·충진·검사·포장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 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50	3305.10-0000	샴푸	두피, 모발세정제 <제외대상> -두피, 모발용 외에 체모나 애완용은 제외(제33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계면활성제(알킬황산염 등)에 기포증진제(아민옥사이드 등), 유화제, 점증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	
51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원하는 머리 모양을 오랜 기간 지속하기 위해 모발에 도포하는 제품 <제외대상>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제33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칭량·가온·혼합·냉각·충진·검사·포장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제3305호의 물품을 포장 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52	3305.30-0000	헤어 래커	머리를 정리하고 머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프레이 형식의 헤어 래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해·가스 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53	3306.10-0000	치약	치약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원재료 계량·교반 및 혼합·균질화·냉각·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54	3307.10 -1000	에프터 쉐이빙 로션	남성용 에프터 쉐이빙 로션으로 플라스틱 용기 등에 소매포장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교반작업 후 내용물에 대한 품질검사 후 생산함	
55	3307.30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가향한 목욕용 염(고상의입욕제) <제외대상>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제3401호에 분류되는 것(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 제3402에 분류되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피부 세정용 조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배합·몰딩(성형)·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56	3307.49 -0000	실내용 방향제 및 탈취제	실내 공간에 향기를 내기 위함이나 냄새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이나 제품 <제외대상> -연소 시켜 사용하는 향기성 조제품(제3307.41호) -향초(제340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교반작업 후 내용물에 대한 품질검사 후 생산함	다만 제조공정에서 특별한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혼합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 제외
57	3307.90 -4000	마스크팩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에센스 제조·시트 성형(또는 완성시트 사용)·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에센스제조공정 국내수행필수	에센스(화장품)를 공급받아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58	3401.30 -0000	바디클렌저(body cleanser)	피부세정제 <제외대상> -소매용이 아닌 것(제3402호) 또는 동물용(제3307호)제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유기 계면활성제를 주 원재료로 화학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혼합 또는 교반 과정을 거쳐 생산	
59	3404.20 -0000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반응·중화·플레이크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	
60	3406.00 -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왁스,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양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에 파라핀 왁스 등을 용해하여 심지를 넣고 성형한 후 굳혀서 생산	
61	3506.10 -2000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플라스틱 원료를 기본재료로 한 소매용 접착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인 용제와 합성수지, 첨가제 등을 넣고 혼합(교반)하여 굳히는 과정을 통해 제조	
62	3506.91 -1000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 수지 등을 기본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이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63	3506.91 -9000	제3901호~제3913호의 폴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 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제3901호~제3913호의 폴리머	

		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 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지 등을 기본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순중량 1kg이하)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64	3707.90-1090	포토레지스트(반도체 또는 오엘이디 제조용은 제외)	빛에 의해 약품 내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화합물 <제외대상> -희토류 등 귀금속의 염과 그 밖의 물품(제2943호~제2846호,제285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29류 또는 제38류)를 사용하여 용해과정을 거쳐 생산	
65	3808.94-0000	소독제	소독제로 소매포장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교반기에 투입 후 혼합하여 생산함	
66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염료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혼합·유화·중합 후 생산	
67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중축하고 냉각하여 PH를 조절	
68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	가죽산업에서 사용하는 완성가공제 또는 그 밖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혼합공정을 거쳐 제조	

		용하는 것	조제품인 것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69	3817.00-0000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	알킬기가 치환된 알킬벤젠 또는 알킬나프탈렌의 혼합물 <제외대상> -이성질체혼합물의것(제29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를 통해 생산된 등유나 방향족 탄화수로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 1.염화파라핀에의한방향족탄화수소의알킬화 2.모노알킬벤젠의 불균화반응 3.선형알킬벤젠의 알킬화 4.올레핀에의한방향족탄화수소의 알킬화	
70	3901.10-9000	기타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으로 한정)	밀도가 낮은 사슬모양의 폴리에틸렌을 펠릿(pallet) 형태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리·분해하여 에틸렌(제2711호)을 분취하고 이를 중합시켜 일차제품 형상으로 생산-중합(polymerization) 및 성형공정 필수	스크랩(제3915호)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71	3901.20-0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1차 형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94% 이상) 중합체의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선별·혼합·세척·탈수·용융 및 압출·절단공정을 거친 후 생산	
72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의 스크랩(scrap)을 절단·용융·압출·커팅·냉각하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절단·용융·압출·커팅 및 냉각과정을 거쳐 생산	

			펠릿형태로 가공한 것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73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과 같이 석유에서 얻어진 프로필렌을 촉매 반응을 통해 중합시킨 것으로 (C3-H6)X-(9003-07-0)로 기재함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정제(조촉매 공급)·반응·제립(용융,절단,고형화)·포장을 통해 제조	
74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스티렌(S)에 아크릴로니트릴(A)을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등)형상이 아닌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스티렌(제2902.50호)과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을 중합, 압출공정을 통해 생산	
75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일차제품의 것)	아크리로니트릴(A), 부타디엔(B), 스티렌(S)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등)형상이 아닌것 -단일단량체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스티렌-부타디엔고무(제40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아크릴로니트릴(제2926.10호), 부타디엔(제2901.24호), 스티렌(제2902.50호)을 주요 원재료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	
76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일차제품의 것)	기타의 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등)형상이 아닌것 -단일단량체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스티렌(제2902.50호)과 부타디엔(제2901.24호)을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77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	가소화 한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일차(블럭, 플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VCM(Vinyl Chloride	

		지 않은 것 제외)	이크, 가루 등) 제품 <제외대상> -스크랩이나 웨이스트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Monomer)을 중합하여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재생하여 생산	
78	3906.10-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일차제품의 것)	메타아크릴산메틸중합체 수지로 광선 투과율이 높음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형상이 아닌것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제40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는 제29류 및 제39류, 제38류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중합 공정을 거쳐 생산	
79	3907.61-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점도번호가 그램당78밀리리터이상인 것)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형상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80	3907.69-0000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점도번호가 그램당78밀리리터이상인것 제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형상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81	3909.40-0000	페놀수지 (일차제품의 것)	페놀류와 포름알데히드로 제조되는 열경화성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형상이 아닌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2907호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제2912.11호)를 주요 원재료로 주반응 공정을 거쳐 생산	
82	3909.50-0000	폴리우레탄 (일차제품의 것)	고분자화합물로 탄성섬유(스판덱스) 원료, 바니시나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제29류의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제3909.10호, 제3909.20호, 제

			<제외대상> -이온교환수지 (제3914호)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3909.31호, 제3909.39호, 제3909.40호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제외
83	3917.32-1000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관·호스·파이프(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의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84	3917.32-2000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관·호스·파이프(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배합, 압출, 냉각 절단 또는 원재료 배합, 용융, 연신 등 공정을 거쳐 생산	
85	3917.40-0000	플리스틱 연결구	조인트(joints)·엘보(elbows)·플랜지(flanges)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연결구 반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86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깔개(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된 플라스틱바닥깔개(접착성유무 불문) <제외대상> -단순 절단한 직사각형 깔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직물과 합지 또는 봉제 또는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생산, 플라스틱일차제품을원재료로성형하여생산하여도무방	동일 호 내의 바닥깔개(반제품)를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원재료와 합지하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제외
87	3919.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롤모양의폭이20센티미터이하인것)	성이 없는 물품(예:포스트잇) -평면 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3920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제외
88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롤모양의것은제외)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예:포스트잇) -평면 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합지 공정을 거쳐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제외
89	3920.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에틸렌의중합체로만든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한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인 폴리에틸렌을 원재료로 원료배합,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 공정을 통해 생산시 적용 제외
90	3920.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프로필렌의중합체로만든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 공정을 통해 생산시 적용 제외
91	3920.30-0000	스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압출하고 보호필름을	

			주성분의 플라스틱 시트임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부착하여 절삭하여 생산	
92	3920.4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전 중량의 100분의 6 미만의 가소제를 함유)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가소제함량(6% 미만)기준은 제3920호 소호 해설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압연(rolling)등 성형 공정 필수	염화비닐 원단에 인쇄·합지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3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제외대상> -외관상 시폭이 5mm 이하(제39류주10참조)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21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94	3920.6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제외대상> -셀룰러(cellular)의 것-외관상 시폭이 5mm 이하의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폴리카보네이트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압연(rolling)등 성형 공정 필수	압출한 시트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적용 제외
95	3920.99-90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제외)	폴리아세탈 수지로 만든 판·시트(sheet)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주10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압연(rolling)등 성형 공정 필수	

96	3921.13-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우레탄으로만든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한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3926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을 주요 원재료로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공정을 거쳐 생산	
97	3921.19-1010	플라스틱 판, 시트 등(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으로이차전지격리막제조용의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한 것 -다른 재료로 적층,보강한 것(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3926호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	여러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98	3921.90-1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주10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에틸렌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99	3921.90-402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연질의 것으로 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연질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100	3923.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가정용품(예: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벌크컨테이너(제6305호)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101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용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주요 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대[콘(cone)을 포함한다]	<제외대상> -가정용품(제3924호) -벌크형컨테이너(제6305호)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합지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하여도 무방	
102	3923.2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콘(cone)도 포함한다](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은 제외)	<제외대상> -가정용품(예: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벌크컨테이너(제6305호)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제3920호), 폴리우레탄(제3909호),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 및 제3909호, 제3907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03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가정용품(예: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벌크컨테이너(제6305호)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병·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적용제외
104	3923.4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풀·콥·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풀·콥·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하여 생산	
105	3924.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보관용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melting)·사출(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사출성형(injectionmolding) 공정 필수	병·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적용제외
106	3926.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손톱을 연장하거나 꾸밀 때 쓰는 인조 손톱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melting)·사출(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사출성형(injectionmolding) 공정 필수	
107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라텍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형상(라텍스) *제40류주3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주요 원재료로 유화제 등을 공중합하여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108	4002.20-9000	부타디엔고무(라텍스는 제외)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만든 합성고무 <제외대상> -가황제나 활성제,가소제,안료(식별을 위한 안료 첨가는 허용) 등의 물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부타디엔(제2901.24호)을 원재료로 중합반응 및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109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라텍스는 제외한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로 만든 일차제 품형상(라텍스는 제외한다) *제40류주3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SAN)을 그라프팅 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110	4005.10-1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가소제 등과 같은 배합제를 첨가한 고무 <제외대상> -재생고무(제4003호) -방직용 직물제에 고무판이 보강된 경우(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고무(제4001호) 또는 합성고무(제4002호)와 카본블랙(제2803.0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성형, 시트냉각 공정을 거쳐 생산	
111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관·파이프·호스(연결구를 부	금속으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금	

		착한 것은 제외한다)	(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세로)길이가관의횡단면치수보다작은것(예:이너튜브,제조용튜빙)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속 와이어 등으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112	4009.31-0000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길이가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 것(예:이너튜브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113	4009.32-0000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로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 <제외대상> -절단길이가횡단면치수보다작은것(예:이너튜브제조용관등) -직조한호스(제59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고무 호스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금속 재질의 연결구 부착 작업 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제외
114	4011.10-1000	고무 타이어[래디알구조의 것(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제외
115	4011.20-1010	고무 타이어[버스용,화물차용(레디알구조의 것으로 림의 지름이 49.53센티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

		미터 미만인 것)]		한-UAE CEPA		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제외
116	4011.20-1090	고무 타이어[버스용,화물차용(레디알구조의 것으로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제외
117	4016.93-0000	가황한 고무제품[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제외대상> -황의 배합률이 높은 딱딱한 경질(hard)고무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된 반제품을 원재료로 커팅 공정(BURR 제거 또는 불필요한 부분 제거)만 거친 경우 적용제외
118	4107.92-0000	소나 마속의 가죽(grainsplit)	<제외대상> -원피(제4101호) -그레인스플릿(제4104호) -전신(whole)가죽(제4107호) -샤미(chamois)가죽(제411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1호) 또는 유연처리 된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4호)를 광물성 물질로 태닝(tanning)한 후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	
119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적층한 것은 제외)	에나멜 도료 등을 도포한 가죽 -표면처리한 도료나 시트의 두께가 0.15m 초과하지 않을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가죽에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하여 생산	
120	4202.21-3000	핸드백(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니시(va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원재료 재단·합봉·장식 등 부착·검품·포장 등 공정을 거쳐 생산	

				한-UAE CEPA		
121	4202.22-2000	핸드백(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방직용 섬유로 만든 핸드백 -방직용 섬유제품 정의는 제11부주7의 "제품으로 된 것(madeuptextilearticle)"부분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재단·합봉·장식 등 부착·검품·포장 등 공정을 거쳐 생산	
122	4805.24-9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제외)	회수한 종이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뮤렌 파열강도 2kPa·m2/g이상의 것) -"재생라이너판" 정의는 제48류 소호주 제5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47류 회수한 종이를 기계·화학적 방법으로 펄프화하고, 이를 종이(sheet) 모양으로 펠트(felt)화시킨 후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펄프화·제지화 공정 필수	
123	4810.29-0000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섬유의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것)(경량의도포한종이는제외)	<제외대상> -전사지(제4809호), 카본지(제4809호), 오프셋 인쇄용 종이(제481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24	4810.92-1010	여러 겹의 종이(제곱미터당 중량이250그램이하인것)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25	4810.92-9000	여러 겹의 종이(백판지와아이보리판지는 제외)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쪄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126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	면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제52류 면섬유를 혼타면·커딩·연	소매용의 면사

		(mercer)처리하지 않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면단사[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이고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	인 면사(재봉사와 소매용 제외)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조·조방·정방공정 등을 거쳐 생산-연조(drawing)·조방(roving)·정방(spinning) 등 방적공정 필수	는 제5207호에 분류
127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폴리아미드 재질의 강력사 (강도 : 단사 60cN/Tex초과,복합사는53cN/Tex초과) *제11부주6호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끈(제5607호),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128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강력사(강도:단사60cN/Tex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주6호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끈(제5607호),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강력사를 공급받아 합연·와인딩(winding)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제외
129	5407.1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의 직물	-"강력사" 정의는 제11부 주 제6호 참조 -"직물"정의는제11부총설(Ⅰ),(C)직물(woven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를 직조(weaving)하여 생산 직조(weaving)공정은 필수	
13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생지직물 <제외대상>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방사·연신하여 실을 만들거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실을	직조공정 필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한-UAE CEPA	만든 후 직조(weaving)하여 생산	
131	5407.42-0000	염색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나일론이나 그밖의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30호의 것을 제외한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백색제외) <제외대상> -합성스테이플사로 만든 직물(제55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2	5407.52-0000	염색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이상인것)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제외대상> -고강력의타어어코드직물(제59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 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3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색실"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사)참조 -"직물" 정의는 제11부 총설(Ⅰ),(C)직물(woven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를 직조(weaving)하여 생산직조(weaving)공정 필수	고강력타이어코드 직물은 제5902호에 분류
134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 (비(非)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이상인 것	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을 표백한 직물 <제외대상> -여과포등기계에 사용되는공업용의직물(제5911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표백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135	5407.61-2000	염색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 전 중 량 의 100분의85이상인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정의는제11부소호주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6	5407.61-4000	날염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날염(printing) 직물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7	5407.69-2000	합성필라멘트사의 염색한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85미만의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8	5407.69-4000	합성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85미만의 날염(printing) 직물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39	5407.72-0000	염색한 그 밖의 직물 (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이상인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 정의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140	5407.8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41	5407.9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부터 제5407.84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직물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42	5502.10-1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44,000데시텍스미만인 것)	목재나 펄프 등의 섬유소를 용해하여 만든 재생·반합성필라멘트 토우 -'제55류주1호'에서 규정한 5가지 토우의 요건 충족 필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초산셀룰로오스를 주원재료로 생산	
143	5503.20-1000	폴리에스테르의 섬유(이형단면인 것)[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합성 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솜모양으로 만든 섬유(이형단면 의 것*) *방사구를 원형이 아닌 Y형 등 여러 모양으로 하여 횡단면을 변형한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구를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사를 절단한 후 토우(병합)로 묶어 섬유모양으로 생산	
144	5503.20-9000	폴리에스테르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이형단면인 것 제외)	합성된 스테이플섬유 중 최대 중량이 폴리에스테르에 있는 것 <제외대상> -길이가 2m를 초과(제5501호) -카드나코움 이상으로 처리된 것(제55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수지)을 원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145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합성스테	-"인조스테이플섬유(단섬유)"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폴리프로필렌 일차제품을	카드(card)

		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정의는 제55류 총설 참조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방사(spinning)하여 토우(tow)를 만들고 권축(crimp)·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spinning)·토우(tow) 공정 필수	하거나 코움(comb)한 것은 제5506호에 분류
146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폴리프로필렌의 것 제외)	기타의 합성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솜모양으로 만든 섬유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147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인조섬유로 만든 담배필터 -"제품"정의는 제11부총설(Ⅱ)"제품으로 된 것(madeuparticle)"부분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아세트산셀룰로오스 일차제품을 방사하여 토우(tow)를 직접 만들거나,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에 가소제 등을 첨가하여 형상을 만들고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토우(tow) 또는 "제품" 성형공정 필수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제품으로 인정할 만한 가공이 있어야 함
148	5607.49-0000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것인지에 상	"로프" 등의 요건은 제11부 총설(Ⅰ)(B)실(yarn), "(1)총설"과 "(2)표Ⅰ" 부분 참조 <제외대상> -연마재를 도포한 것(제6805호) -포장용 끈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방사하거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 공정 필수	

		관없다]				
149	5801.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제의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직물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것을 포함함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코듀로이 조직으로 제직한 다음, 염색·후가공(골형성 등) 등을 거쳐 생산	제직 및 염색된 제품에 후가공처리와 같은 단순 공정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
150	5807.10-1000	직조하여 생산한 레이블	상표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섬유제레이블 <제외대상> -수를 놓은 것(제5810호) -의류의 부속품 성격을 가진 견장·완장·휘장(제62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직조공정을 거쳐 생산	
151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타이어 제조 시 보강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제외대상> -제11부 주6호의 강력사 기준 미충족 -고무로 피복·적층한 직물(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직조(weaving)하여 생산한 경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52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제59류주2호참조			
153	5903.20-000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주2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54	5903.90-000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폴리(염화비닐)및폴리우레탄의것은제외]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이외의 플라스틱재질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제59류주2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55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시멘트나 철강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등을 집진시설 내에 설치하여 여과(필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필터용 원단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필라멘트 원사를 이용해 직조(weaving)하여 여과포를 만들고 열처리·절단·봉제 등을 거쳐 생산	직조공정 필수

			제11부 8호 나목에 따른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 특성(공업용)을 지닌 것			
156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합성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테리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터프트(tuft)한직물(제5802호),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57	6001.21-0000	면으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면(최대중량)으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섬유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58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합성섬유(최대중량)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루프 등을 형성하고 염색 등의 공정을 거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59	6001.92-0000	기타 편물(인조섬유로 만든 것)	롱파일, 루프파일을 제외한 기타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물기계로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0	6004.10-0000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폭이30㎝를 초과하는것으로서탄성사의 함유중량이전 중량의100분의5이상이며, 고무실은함유하지않은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사 또는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1	6004.90-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폭이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고무사의 함유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5 이상인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30cm이하의 것 -탄성사,고무사함량이5%미만 -제품형상으로만든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사 또는 인조 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2	6005.35-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직물류 (염색한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세로방향으로 공급하여 고리끼리 연결하는 사다리 꿰매기형의 경편직물(warp knit fabrics)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합성섬유사 등을 제직하여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3	6005.36-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	-"경편직(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하여 표백·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편물을 공급 받아 표백 공정만 거친 경

		백한 것)	(Ⅱ)부분 참조 -"표백"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마)목 참조 <제외대상> -편직이 아닌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직한 직물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편직(knitting)·재단 공정은 필수 -원사는 역외산 가능	우 적용 제외
164	6005.37-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염색한 것)	-"경편직(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 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 (Ⅱ)부분 참조 -"염색한직물"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바)목 참조 <제외대상>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직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한 후 염색·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편직(knitting)·재단·염색공정은 필수 -원사는 역외산 가능	편물을 공급받아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5	6006.22-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것)	면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66	6006.23-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서로다른색실의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서로 다른 색의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167	6006.24-0000	면으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날염한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30cm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하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168	6006.3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169	6006.34-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70	6006.42-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

		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외
171	6006.44-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72	6006.90-0000	그 밖의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 (기타의것)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섬유, 재생섬유 제외)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30cm이하의 것 -탄성사,고무사함량이5%이상 -제품형상으로만든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 섬유, 재생섬유제외)의 사를 편직하여 편물을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73	6109.90-3010	인조섬유 티셔츠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 <제외대상>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폴리에스터 원단(제54류)을 가공·재단·나염·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재단(cutting)·봉제(sewing) 공정 필수

			(collar)이 들어간 것 -의류 끝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의류 -제6105호의 남성용 셔츠·제6106호의 여성용 브라우스	한-UAE CEPA		
174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편물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으로 겉면을 도포된 것 <제외대상> -모피나 인조모피 재질(제43류) -유아용 장갑(제6111호) -편물제가 아닌 것(제6216호) -마사지, 화장용 마찰 장갑(제630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면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편성 후 장갑을 만들고 표면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장갑을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 침투시키는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75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렌즈의 먼지나 얼룩을 닦기 위한 방직용 섬유제품 -"제품"정의는 제11부 총설(Ⅱ)"제품으로 된 것(madeuparticle)"부분참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52류 면사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직접 직조(weaving)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직조된 직물을 특정 모양으로 재단·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재단·봉제 등 "제품" 공정 필수	직조된 원단에 후가공처리 등 단순 공정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
176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 -방직용 섬유 제품 정의는 제11부주7의 "제품으로 된 것(madeuptextilearticle)"부분참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부직포(겉감,안감,필터) 재단·코편삽입·용착(재봉)·끈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 및 조립된 제품에 후가공처리와 같은 단순 공정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
177	6309.00-0000	중고 의류	사용한 흔적이 명확한 의류나 의류의 부속품(예 : 스카프, 장갑 등), 가정용 실내용품(예 : 커튼, 테이블보 등)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국내에서 수집된 것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의류는 적용 제외

			-양탄자, 바닥깔개(제5701~5703호) -매트리스나 누비이불 등(제9404호) -방수포나 텐트 등(제6306호) -석면 재질의 것(제6812호)			
178	6804.21-0000	그라인딩휠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원재료 혼합, 성형, 소결, 접합, 연마의 공정을 거쳐 생산 -최소혼합,성형,소결공정은국내수행필수	반가공품(Blank)을 공급받아 가공한 것은 적용제외
179	6909.12-0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것)	"모스 경도 9 이상" 정의는 제6909호 소호 해설 부분 참조 <제외대상> -그라인딩휠(제6804호)내화도자제(제6903호) -서멧제품(제811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28류 산화알루미늄이나 탄화규소 등의 원료를 배합한 후 성형·소결(sintering)·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배합·성형·소결(sintering) 공정 필수	
180	6911.10-2000	자기제의 접시	자기제 그릇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반죽·성형·건조·문양·초벌·유약·재벌과정을 통해 생산	
181	6913.10-0000	자기제 도자제 장식용 제품	자기제 장식품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반죽·성형·건조·문양·초벌·유약·재벌과정을 통해 생산	
182	7006.00-4000	가공한 유리시트 (액정디스플레이용)	제7003호 ~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 처리한 유리 <제외대상> -유리에 다른 재료(목재·금속등)가 결합된 제품(예:사진틀,문자판) -안전유리(제70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를 주요 원재료로 다음의 가공 중 하나 이상을 거친 경우 1.평면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한 것 2.가장자리를 가	

			-유리제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거울 형상의 유리(제7009호)등		공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notched)·모따기 한 것(chamfered)·사각지게한 것(bevelled)· 프로파일한 것(profiled)등 3.천공(穿孔)하거나 홈이 파진 공정 4.제조 후 표면 가공을 한 유리(예시:불투명처리,에나멜을칠한 율리,무늬·장식·여러연속도안장식된유리)	
183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귀금속(금, 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 (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음)	
184	7113.19-2000	귀금속제신변장식품 (금으로만든 것)	귀금속(금, 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 (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음)	

185	7114.19-1000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 제품 (은또는귀금속을입힌비금속으로만든것은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86	7114.19-90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은으로 만든 것, 식탁용의 것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것(예: 종교용품 등)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87	7202.11-0000	페로망간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는것)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트,탄화규소(제2825호,제2849호 등) -페로세륨,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 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188	7202.19-0000	페로망간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는것은제외)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탄화규소(제2825호,제2849호 등) -페로세륨,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 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89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ferro-silico-manganese)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탄화규소(제2825호,제2849호 등) -페로세륨,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 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9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철강제조나 고철제품 해제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스러기나 이를 용융한 잉곳 <제외대상> -원료가 아닌 보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국내 제조과정 발생한 부스러기를 수집되었거나 수집한 폐기물 등을 분해하여 리사이클링 기계 등을 이용해 스크랩 등을 선별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 적용 제외

			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기둥, 선로 등)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 ,스케일링과 웨이스트(제2619호) -선철, 스피그라이즌 조각(제7201호)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철강웨이스트(제2844호)			
191	7205.21-0000	합금강의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 및 알갱이 제외]	"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 -"가루"정의는 제7205호 해설(B)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2821호의 산화철, 제7206호의 철괴 등을 주 원재료를 배합·열처리·분쇄 및 건조·혼합 등 공정을 거쳐 생산	
192	7208.25-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 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193	7208.25-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外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94	7208.2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外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195	7208.2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外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96	7208.2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外제품의 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 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97	7208.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外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98	7208.3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外가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99	7208.3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품의특성을가진 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허용			
200	7208.3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 제외한다. 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면처리 外 가공한 것 -평판형상 外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 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201	7208.3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은 제 외 한 다 . 폭 이 600 밀 리 미 터 이 상 두 께 가 4.75 밀 리 미 터 이 상 10 밀 리 미 터 이 하 인 것 (인 장 강 도 가 490 메 가 파 스 칼 이 상 인 것 은 제 외)]	도포, 도금한 것 - 플 라 스 틱 수 지 (예 : 에 나 멜) 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 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 면처리 외 가공 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 (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 (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 기는 무늬나 금 속의 성질을 향 상하기 위한 표 면 처리 등은 허용			
202	7208.38 -1000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평 판 압 연 제 품 [열 간 (熱 間) 압 연 한 것 으 로 한 정 하 고 , 클 래 드 (clad) · 도 금 · 도 포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폭 이 600 밀 리 미 터 이 상 두 께 가 3 밀 리 미 터 이 상 4.75 밀 리 미 터 미 만 인 것 (인 장 강 도 가 490 메 가 파 스 칼 이 상 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 를 열간(熱間)압 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 라 스 틱 수 지 (예 : 에 나 멜) 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 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표 면처리 외 가공 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 (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 (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 기는 무늬나 금 속의 성질을 향 상하기 위한 표 면 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일 차 제 품 (제 7206 호) · 반 제 품 (제 7207 호) 또 는 웨 이 스 트 와 스 크 랩 을 사 용 하 여 열 간 (熱 間) 압 연 하 여 생 산	

203	7208.38 -9000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평 판 압 연 제 품 [열 간 (熱 間) 압 연 한 것 으 로 한 정 하 고 , 클 래 드 (clad) · 도 금 · 도 포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폭 이 600 밀 리 미 터 이 상 두 께 가 3 밀 리 미 터 이 상 4.75 밀 리 미 터 미 만 인 것 (인 장 강 도 가 490 메 가 파 스 칼 이 상 인 것 은 제 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 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 라 스 틱 수 지 (예 : 에 나 멜) 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 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 품의 특성을 가 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 (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 (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 기는 무늬나 금 속의 성질을 향 상하기 위한 표 면 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일 차 제 품 (제 7206 호) · 반 제 품 (제 7207 호) 또 는 웨 이 스 트 와 스 크 랩 을 사 용 하 여 열 간 (熱 間) 압 연 하 여 생 산	
204	7208.39 -1000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평 판 압 연 제 품 [열 간 (熱 間) 압 연 한 것 으 로 한 정 하 고 , 클 래 드 (clad) · 도 금 · 도 포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폭 이 600 밀 리 미 터 이 상 두 께 가 3 밀 리 미 터 미 만 인 것 (인 장 강 도 가 490 메 가 파 스 칼 이 상 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 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 라 스 틱 수 지 (예 : 에 나 멜) 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 된 것(제71류) -연마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 공한 것 -평판형상외제품 의특성을가진것 - 각 이 있 는 립 드 (ribbed)제품(제 721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 이 나 비 합 금 강 의 일 차 제 품 (제 7206 호) · 반 제 품 (제 7207 호) 또 는 웨 이 스 트 와 스 크 랩 을 사 용 하 여 열 간 (熱 間) 압 연 하 여 생 산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05	7208.39-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206	7208.51-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07	7208.51-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208	7208.52-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 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09	7208.52-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210	7208.54-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	

		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여 생산	
211	7208.54-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212	7209.16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는	한-아세안 FTA,	철이나 비합금강	

	-1000	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밀리미터를초과하고 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213	7209.1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1밀리미터를초과하고 3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14	7209.1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215	7209.1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16	7209.18-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217	7209.1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218	7209.2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은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219	7209.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	

		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폭이600밀리미터이상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은제외)]	-금속으로표면을 도포,도금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연마같은단순표면처리외가공한것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생기는무늬나금속의성질을향상하기위한표면처리등은허용		을 거쳐 생산	
220	7210.12-0000	주석을 도금·도포한 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평판압연제품에 주석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화학적표면처리나크론산염처리를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제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의 표면을 세척, 소둔 후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221	7210.30-9000	아연 전해 도금 및 도포처리된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인장강도 340메가파스칼 미만]	평판압연제품에 아연을 전해 도금 등을 한 것 <제외대상> -단순한화학적표면처리나크론산염처리를한것 -플라스틱수지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	

			(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도금 전해욕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전해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222	7210.49-1010	아연을 도금·도포한 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평판압연제품에 아연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화학적표면처리나크론산염처리를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223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도금·도포한것으로한정하고,인장강도가340메가파스칼이상인것]	평판압연제품에 알루미늄·아연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화학적표면처리나크론산염처리를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	

			-반가공된비금속 블랭크(제82류)		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224	7210.70-2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의 페인팅한 것 등 [폭 600mm 이상, 두께 4.75mm 미만]	평판압연제품에 페인팅 등을 한 것 <제외대상> -단순한화학적표면처리나크론산염처리를한것 -플라스틱수지(예:에나멜)로도포한것 -귀금속으로피복된것(제71류) -평판형상외제품의특성을가진것 -각이있는립드(ribbed)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반가공된비금속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이나 반제품을 압연(rolling)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일정 폭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압연 등의 성형공정 또는 기계가공 ·도금(coating) 공정 필수	단순히 페인트 도포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25	7212.40-2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도장 처리된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두께 4.75mm 미만)"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도금·도포·클래딩(피복처리)" 정의는 제72류 총설 참조 -"평판압연제품" 정의는제72류주1(차)목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연(rolling)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12호 제외)을 일정 폭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압연 등의 성형공정 또는 기계가공 ·도금(coating) 공정 필수	단순히 페인트 도포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26	7216.33-4000	H형강(높이가300밀리미터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것)	횡단면이 균일한 H형상의 긴 강철 <제외대상> -철강구조물의구성부품(제7308호) -철도레일용의받침목이나좌철등(제73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정련, 주조,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중간 제품(Beam Blank)을 공급받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227	7217.10-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도금하	"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선"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재(wire rod) 등을	

		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정의는 제72류 주1 (하)목 참조	한-인도 CEP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코팅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또는 신선(wire drawing) 공정 필수	
228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스테인리스강" 및 "선(線)"의 정의는 제72류 주1(마)목 및 (하)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drawing) 또는 신선(wire drawing) 공정은 필수	
229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평판압연제품(폭인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상온(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방법으로 생산된 평판(시트, 판, 스트립 등) 모양의 철강제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05호~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 등 반제품이나 일차제품을 원료를 압연하여 생산	제7225호를 공급 받아 단순 표면 처리시 적용 제외
230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고속도강, 실리코망간강, 내열강, 붕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0008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불규칙하게 감아 놓은 코일 형상의 열간압연 합금강의 봉* *제72류주1(카)규정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05호~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231	7228.50-0000	그 밖의 합금강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기타의 합금강으로 된 기타의 봉(bar and rod) -"기타의 합금강" 정의는 제72류 주1(바)목참조 -"그밖의 봉" 정의는 제72류주1(타)목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 등의 성형공정을 거쳐 생산 -압출(extrusion) 성형공정필수	
232	7305.11-1000	철강으로 만든 횡단면이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	

		원형인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하였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방법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수송용 배관 -"관"정의는제73류총설(1)참조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및 용접(welding) 공정은필수	
233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 (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제72류주1(마)목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및 용접(welding)공정은필수	
234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제72류주1(마)목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및 용접(welding)공정은필수	
235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합금강*으로 용접하여 만든 봉이나 관 *제15부주5및제72류주1(바)규정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를 주요 원재료로 성형공정, 용접공정을 거쳐 생산 제7205~7208호또는제7214호,제7218호,제7224호~7226호등의반제품이나일차제품형상을원료로제강또는압연공정등을통해생산	

236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	관의 이음새 부분에 사용되는 철강제 플랜지 <제외대상> -제7308호,제8481호,제8547호,제8714호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강을 주요 원재료로 플랜지 몸체를 단조공정 또는 절단공정을 통해 플랜지 몸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랜지 반제품을 공급받아 드릴링, 마킹 공정 또는 간단한 공정만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237	7307.93-0000	철강제품(바트(butt)용접용연결구)	관 등을 연결하기 위한 바트 용접용 철강제품 <제외대상> -관을 벽에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행거, 피스, 조임용 밴드 등(제7325호등) -철강제 구조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 -탭, 콕, 밸브 등을 결합된 것(제8481호)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조립용의 것(제8714호) -온도조절식익스팬션조인트(제8307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성형 또는 단조 공정을 거쳐 생산	
238	7308.30-0000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 중 문	철강재질의 문(미닫이문, 주거용 안전 문 포함) <제외대상> -수상구조물(제8906호)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된것철강제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로 제72류의 물품을 절단, 절곡, 용접 등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7308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예 : 문틀, 문 반가공품)을 공급받아 단순 부착, 드릴링, 조립 등 단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제7308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예 : 문틀, 문 반가공품)을 공급받아 단순 부착, 드릴링, 조립 등 단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239	7308.40	철강으로 만	철강재질의 구조	한-아세안 FTA,	주로 제72류의	7308호

	-0000	든 구조물 중 비계(飛階)	물 중 비계 <제외대상> -수상구조물(제8906호)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된것철강제가설물의일종.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물품을 절단, 절곡, 용접 등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7308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예 : 반가공품)을 공급받아 단순 부착, 드릴링, 조립 등 단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제외	에 해당하는 부분품을 공급받아 단순 부착, 드릴링, 조립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4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는 상관없음)	철강재질의 탱크(용도불문) <제외대상> -운송수단에 탑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제8609호) -가열이나 냉각용의 통(제8480호) -철도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제73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설계, 원재료 가공, 원재료 결합(용접) 공정을 거쳐 생산	
241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운반이나 포장 목적의 철강제용기(50ℓ~300ℓ) <제외대상> 컨테이너(제8609호) 및 제4202호,제9617호, 제7323호, 제7325호, 제7326호, 제830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주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생산	
242	7312.10-2099	철강(스테인리스강 제외)으로 만든 로	강선을 여러 겹 합쳐 꼬아서 강도를 높인 로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직접 인발	이미 완성된 철제 연선

		프와 케이블(전기절연한 것은 제외)	와 케이블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drawing)하거나, 제7217호 선(wire)을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합사(twist)·연선(wirestranding) 공정은필수	이나 케이블에 코팅, 착색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43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나선 가공된 머신 스크루(machine screws)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으로 주조(casting)나 단조(forging)의 방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밀링 등의 기계가공을 거쳐 생산 단조 등의 성형 공정 및 나선(threaded) 공정 필수	
244	7318.15-2000	볼트(bolt)	철강제 볼트 <제외대상> -스크루네일(제7317호) -나사식의캡,마개(제8309호) -피아노등악기에 사용되는부분품(제92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245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된것)	<제외대상> -스크루네일(제7317호) -나사식의캡,마개(제8309호) -피아노등악기에 사용되는부분품(제92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너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246	7318.16-0000	너트(nut)	철강제 너트 <제외대상> -스크루네일(제7317호) -나사식의캡,마개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단조한 봉(제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7229호) 등의 제	너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정

			(제8309호) -피아노등악기에 사용되는부분품(제9209호) -제9021호의것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을 통해 생산 된 물품 은 적용 제외
247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기타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주방용 저장 깡통 -"스테인리스강" 정의는제72류주1(마)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248	7326.90-9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타의 철강제품 <제외대상> -철강제주물제품(제7325호) -철강제탱크(제7309호,제7310호) -피아노등악기에 사용되는부분품(제9209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및 제73류(제7326호 제외)를 주요 원재료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 등을 거쳐 생산	
249	7408.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선(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정제한 구리" 정의는 제74류 주1(가) 참조"선(wire)" 정의는 제74류 주1(바) 참조	RCEP,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도금 등의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공정 필수	
250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정제한 구리*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 *제74류주1호(가)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51	7409.19-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모양이 아닌 판·시트나 스트립 *제74류주1호(가)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반도체 제조용 제외)]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252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소호주1(가)참조 <제외대상> 두께가0.15mm이하인것(제7410호),전기절연한것(제8544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403호의 구리 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53	7409.29-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소호주1(가)참조 <제외대상> 두께가0.15mm이하인것(제7410호),전기절연한것(제8544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403호의 구리 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254	7409.31-9000	구리-주석 합금의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소호주1(나)참조 <제외대상> 전기절연한것(제8544호)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구리 및 주석의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열간 및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255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것)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뒷면을 보강재로 결합하지 않은 것) *제74류주1호(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0.15mm초과한것(제7409호),레이블(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구리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구리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주조, 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생산	

			4911호)등			
256	7411.10-0000	구리관(정제한구리로만든것)	<제외대상> -중공프로파일(제7407호) -관연결구(제7412호) -플렉시블튜빙(제8307호) -특별히기계의부분품형태로제작된것(제16부) * '정제한 구리'의 정의는 제74류 주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일차 제품의 구리 또는 스크랩, 전기동 등을 용해, 주조, 압출, 인발, 절단, 표면처리하여 관을 만들고 전기분해 등을 통해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	동관(제7411호)을 공급받아 인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257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정제한 구리" 정의는 제74류 주1(가) 참조"관 연결구" 정의는 제7307호 해설서 참조 <제외대상> 밸브나탭·콕등을갖춘연결구류(제8481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반제품을 주조(casting)나 압출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구리의 관을 절단·굽힘 등의 기계가공을 거쳐 생산 주조(또는 기계가공) 등 성형공정 필수	
258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두 줄 이상의 구리선을 꼬아서 하나의 도선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전기절연전선(제8544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반제품 형상의 구리를 용해하여 일정 굵기로 압출한 후 꼬아주는 공정을 통해 생산	
259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괴(기타)	<제외대상> -니켈가루와플레이크(제7504호) -전기도금용니켈양극(제7508호) *'니켈합금'의정의는제75류소호주1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260	7502.20-0000	니켈 합금 괴	니켈-합금*의 잉곳이나 큐브 등의 형상 *제75류소호주1(나)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 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제7503호(웨이스트)원재료로사용가능	
261	7601.20	합금알루미늄	<제외대상>	한-아세안 FTA,	알루미늄 스크랩	합금하

	-1000	괴[캐스팅얼로이(castingalloy)]	-알루미늄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소결하여얻어진서멧(제8113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62	7601.20-2000	빌릿(billet)	<제외대상> -알루미늄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소결하여얻어진서멧(제8113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 금 하지 않은 알 루 미늄 (제 7601.10호) 을 재 료 로 생 산 시 적용 제외
263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프로파일 *제76류주1(나)및 소호주1(나)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탑,지붕등)용으로 가공한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형상의알루미늄을압출,인발,주조,단조하여 생산하거나빌렛 등을절삭가공한 후표면처리등을 통해생산	
264	7604.29-1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 *제76류주1(나)및 소호주1(나)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탑,지붕등)용으로 가공한것 -도포된 용접봉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형상의알루미늄을압출,인발,주조,단조하여 생산하거나빌렛 등을절삭가공한 후표면처리등을 통해생산	
265	7604.29-9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제76류주1(나)및 소호주1(나)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탑,지붕등)용으로 가공한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상의 알루미늄을 압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 등을 통해 생산	
266	7606.12-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	<제외대상> -두께0.2mm이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알 루 미늄 판·

		(sheet)·스트립[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고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모양인것)]	인것(제7607호) -익스팬디드메탈(제7616호) -두께가폭의1/10초과한것 *'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롤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시트·스트립에 플라스틱 필름 합지 또는 도포 공정을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67	7606.92-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고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모양인것은 제외)]	<제외대상> -두께0.2mm이하인것(제7607호) -익스팬디드메탈(제7616호) -두께가폭의1/10초과한것 *'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제7606호의 해당하는 원재료로 플락스틱 합지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268	7607.11-9000	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箔)[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스탬프용 박(제3212호) -식품 밀봉용으로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박(제4811호) -인쇄된알루미늄레이블(제4911호) -크리스마트 트리 용 박(제9505호)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여 생산	
269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	에어컨 및 공조기에 열교환기핀 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박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06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연·세척·열처리·텐션레버링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	

270	7607.20-9000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보강재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제외대상> -스탬프용박(제3212호) -식품밀봉용으로종이(본질적특성)에결합된알루미늄박(제4811호) -인쇄된알루미늄레이블(제4911호) -크리스마스트리용박(제9505호) -두께가0.2mm초과한것(제7606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271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管)	-"알루미늄 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나) 참조 -"관"의정의는제76류주1(마)목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6류 알루미늄 일차제품이나 반제품을 압출하거나, 주조(casting)·단조(forging) 등의 방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생산-압출(extrusion) 등 성형공정 필수	
272	7610.90-9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	알루미늄재질의 구조물(건물, 탑, 다리 등)을 구성하는 부품 <제외대상> -수상구조물(제89류)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된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성형하여 주조하거나 봉이나 관, 판재 등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273	7801.10-1000	납의 괴(정제한것으로납의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99.99 이상인것)	<제외대상> -가루와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 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제7801.91호 또는 제7801.99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품은 적용 제외
274	7801.10-9000	납의 괴(정제한것으로납의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99.99 이상인것은제외)	<제외대상> -가루와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제7801.91호 또는 제7801.99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275	7801.99-2090	납의 괴(기타의것으로정제한것은제외)	<제외대상> -가루와플레이크(제7804호) *'정제한납'의정의는제78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제7801호의 납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제외
276	7901.11-0000	아연의 괴(합금하지않은것으로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이상인것)	<제외대상> -가루와플레이크(제7903호) *'합금하지않은아연'의정의는제79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아연괴(제7901.12호)를 사용하여 순도만 높이는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77	7901.12-0000	아연의 괴(합금하지않은것으로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미만인것)	<제외대상> -가루와플레이크(제7903호) *'합금하지않은아연'의정의는제79류소호주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278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외대상> -원료가아닌보수하면재사용이가능한형태(예:기둥,선로등) -아연제조시생기는슬래그,회,전기도금시침전된슬러지나금속잔재물(제2620호) -아연웨이스트를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국내 아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아연 부스러기를 수집하거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기계 등을 이용해 아연을 선별분리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 적용 제외

			재용해하여덩어리형태로주조한것(제7901호)			
279	7904.00-3000	아연 선(線)	<제외대상> -용제물질이도포된것(제8311호) *'선'의정의는제79류주제1호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황화광(아연광)이나 탄산염광 등을 열환원, 전해법 등을 통해 추출하거나 아연의 괴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	
280	8001.20-0000	주석 합금 괴	주석-합금*의 잉곳이나 큐브 등의 형상 *제80류소호주1(나)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석광(제2609호) 또는 제8002호(웨이스트, 스크랩)등 으로부터 생산	합금하지 않은 주석(제80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81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	세라믹(ceramic) 분말과 금속(metal) 분말을 압축하여 성형한 봉 -"서멧"의정의는 제15부주제4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세라믹스와 탄화텅스텐(제2849호), 코발트(제8105호) 등의 분말을 배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sintering)하여 생산 성형(forming)·소결(sintering) 공정필수	
282	8209.00-109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으로 코팅처리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공구에부착된것은공구가해당하는호(특히제8207호)에분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혼합·밀링·건조·성형·소결·연삭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최소혼합·밀링·건조·성형·소결공정국내수행필수	반가공품(Blank)을 공급받아 생산된 것은 적용제외
283	8302.10-0000	경첩	창문이나 가구의 문짝을 여닫는 연결부위에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 부착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284	8302.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카스터	카스터(castor)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	다만 단순조립, 도색,

		(castor)	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 공기를 넣은 타이어(tyre)를 가진 카스터(castor)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호에서 살(spokes)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의 용어나 이 류의 주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한다(예:제87류).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로 주조하여 생산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제외
285	8302.30-0000	비(卑)금속제 차량용 부착구	차량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 손잡이, 봉, 브래킷 등) *제15부주3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제외
286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문의 손잡이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투입해서 프레스 및 캐스팅 작업 후 연마작업을 통해 제조	
287	8302.42-0000	비(卑)금속제 가구 부착구	가구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 문고리, 꺽쇠, 파스너 등) *제15부주3참조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제외
288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유류를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산	
289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가스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90	8412.21-1000	액압실린더	유압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장치 <제외대상> -유압식의자동도어개폐기(제8302호) -차량용서스펜션쇼업쇼바(제8708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제72류 철강 및 제73류 철강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전장가공, 내경가공, 용접, 세척,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291	8413.30-4000	액체펌프[제87류에 해당하는차량용(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펌프, 엔진오일펌프, 냉각수펌프 <제외대상> -액체용의살포기, 분사기(제8424호) -수동식의그리스건(제8205호) -압축공기식의그리스건(제8467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연료펌프는 바디, 플런저, 플런저 스프링, 푸시로드,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 워터펌프는 임펠러, PULLEY, 베어링, 고무씰 등으로 구성, 오일펌프는 구동로터와 폴리, 기어 등으로 구성	
292	8413.30-900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엔진(내연기관)의 기계적 운동을 압력으로 바꾸는 피스톤형 액체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293	8413.81-9000	기타 펌프(수영장용 펌프는 제외)	액체를 압축해서 이송하는 기타의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임펠러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294	8414.30-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냉장, 냉동고 등에 사용되는 기체용 압축기 (11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로터,스타터,샤프트,임펠러등의부품을조립하여생산	
295	8414.59	기타의 팬(출	날개를 통해 공	한-중 FTA,	플라스틱사출 또	완제품

	-9000	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과 항공기용, 그리고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기를 배출하여 환기하거나 열을 식히는 장치 -출력125와트이하의전동기를갖춘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은 제8414.51호에분류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는 비금속제 주물공정 등을 통해 생산 된 팬에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
296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체(연기, 냄새)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임펠러,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
297	8414.80-9190	그 밖의 기체 펌프(항공기용 제외)	제8414.10호~제8414.30호를 제외한 그 밖의 기체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

						산할 경우 적용제외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
298	8414.80-9210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74.6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실린더,피스톤,밸브,탱크또는임펠러,디퓨져,샤프트,스크류등을조립하여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99	8414.80-9220	그 밖의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74.6킬로와트 이상~373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져,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0	8414.80-9230	그 밖의 기체 압축기(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373킬로와트 이상)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져,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1	8414.80-9900	기타의 팬·후드 등	제8414.10호~8414.80-9230호의 물품을 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

			외한 기타의 것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하여 생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2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방, 제습, 청정)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조합시킨 장치로, 벽에 고정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제8516호,제8479호,제8418호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3	8415.10-2020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이상인것)	실내 온도와 습도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철강으로 만든 비전기식의 방열기나 온풍 배분기(제7322호) -전기식(히터) 라디에이터, 전기식(히터)난방기(제8516호) -가습기나 제습기(제8479호) -공기조절용 냉각기(제841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304	8415.10-9020	공기조절기(창형·벽형 제외)(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방, 제습, 청정)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조합시킨 장치로 벽이나 창 이외의 곳에 고정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5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나 오븐[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	철강제조에 사용되는 용해로나 소둔로 등의 노(爐)나 오븐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주요 구성부품인 예열로 제작, 본체제작, 소입유조 제작 등을 통해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리용으로 한정한다		한-UAE CEPA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6	8418.10-1030	냉장고 등(용량이400리터를초과하는 것)	식품이나 약품 등을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한제 (freezingsalt)용 냉동고(제8479호) -열교환방식(waterflow)의 냉각기(제8419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도어, 내부선반,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307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탱크나 증류탑(column), 이송관 등의 구조물을 만들고 유량계나 밸브, 펌프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8	8419.50-9000	열교환기(항공기용,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제외)	금속판 전열벽 등을 통해 높은 온도의 유체로부터 낮은 온도의 유체에 열을 전달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프레임, 열교환부(관, 코일 등), 커버 등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09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 제지용, 직물용, 가죽용, 고무용·플라스틱용, 인쇄회로 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은 제외한다)	얇은 시트 형상의 종이나 섬유, 가죽, 플라스틱의 표면을 마무리하거나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압 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품인 실린더, 부분품을 조립하여 생산 -경우에 따라 냉각이나 가열 장치가 결합될 수 있음.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0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차량의 내연기관용 오일 또는 연료 필터를 위한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철강재 또는 플라스틱 몸체 및 필프제의 필터블록(block)(제4812호)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 등을 원재료로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필터엘리먼트에 단순히 보강판이나 캡 등을 씌우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311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노즐 등을 통해 병이나 탱크, 식기 등을 세정하거나 건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2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	병이나 용기의 틈, 구멍을 봉하여 붙이는 거나, 뚜껑을 잠그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이송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3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인쇄된 상표 등을 용기에 부착하거나 병 입구(예: 와인) 등에 호일 등으로 캡슐링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4	8422.40-4000	열수축 포장기계	열가소성 필름(PP, PE 등)을 이용해 제품을 포장하고,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5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자동으로 제품(예: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6	8422.40-9020	자동결속기	자동으로 제품(예: 목재, 시트, 박스 등)을 끈 등으로 묶어주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7	8422.40-9030	진공포장기	다양한 제품(예: 식품, 약품, 공업부품, 반도체 등)을 진공상태로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8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약제(인산암모늄 등)나 가스(CO2)를 압력용기에 넣은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노즐, 손잡이, 밸브, 용기, 캡 등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

						산할 경우 적용 제외
319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각종 제과 공정(반죽, 성형, 발효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제외대상> 가정용 또는 포장용(주입),제분용, 오븐,여과기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물 등의 공정을 통해 성형기나 반죽기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주형틀을 이용해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기계 *재료:가루나페이스트형상의세라믹,석고,시멘트 등광물성생산품 <제외대상> -금속,유리,플라스틱성형기(제8480호,제8475호,제8477호) -도자기,콘크리트 등공작기계(제8464호) -범용성프레스(제8479호)등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1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예열된 재료*를 좁은 구멍에 밀어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성형하는 기계 *재료:플라스틱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2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진공상태에서 재료*(예 : 판)를 형틀에 눌러서 성형하는 기계 -사출성형기와압출기를제외한기타열성형기 *재료:플라스틱, 고무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3	8477.80	고무나 플라	진공·사출성형기,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완제품

	-0000	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성형기나 압출기를 제외한다)	압출기, 그 외 열성형기, 이너튜브 성형기 등을 제외한 기타의 플라스틱·고무 가공용 기계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4	8479.81-3000	권선기	전기 케이블이나 금속 케이블을 보빈 등에 감는 장치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전기모터(제8501.40호), 센서(제8538.90호), 부분품(제8479.9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각 파트 및 완제품 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325	8479.82-1000	혼합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을 이용해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유압시스템, 믹싱, 플랫폼, 탱크 등의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6	8479.82-4000	교반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으로 휘저어 균일한 상태로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유압시스템, 교반, 플랫폼, 탱크 등으로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27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유압장치에서 오일의 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내연기관용흡입/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용슬라이드밸브(제8434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328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공압장치에서 공기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하는 밸브 <제외대상> -내연기관용흡입/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용슬라이드밸브(제8434호)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329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배관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몸체, 커버, 가이드, 디스크, 고정장치, 개스킷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0	8481.40-0000	안전밸브	압력 배관에 설치되어 일정 압력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몸체, 커버, 스프링, 개스킷, 디스크, 고정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1	8481.80-1010	밸브(전기 작동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전기작동 밸브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2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자동제어 밸브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3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배관에 설치되어 유로를 여닫거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제 주물공정 등을 통해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4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100밀리미터이하인 것)	외륜과 내륜 사이에 볼을 넣어 윤활 효과를 내는 장치 <제외대상> ·베어링과하우징이결합된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335	8482.10-9000	볼 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외)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되어 기계부품의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 -전동체:볼 <제외대상> ·베어링과하우징이결합된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6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 되어 기계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 장치 -전동체:원추형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7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 되어 기계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 장치 -전동체:니들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38	8483.10-9010	전동축[캠샤프트(camshaft)와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철강재를 단조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공정을 거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포함]크랭크(crank)(제87류차량용)	<제외대상> -프로펠러샤프트, 하프샤프트,구동차 축(drive-axles)등(제8708호)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쳐 생산	
339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항공기용 제외](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 제외)	베어링을 감싸 축에 고정시키기 위한 프레임(필로우형, 플랜지형 등)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압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가공 등을 거쳐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40	8483.40-9010	기어	전동축과 물려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제외대상> -반제품형태의단조품(제7207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철강을 절삭 또는 성형하여 생산, 또는 제39류플라스틱일차제품을원료로사출성형하여 생산	반제품 또는 블랭크(제8483호)을 원재료로 정밀 절삭공정 만 거쳐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341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block)을포함한다]로서항공기용이외의것	-(플라이휠) 축의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한 바퀴(플라이휠, 커버, 플렌지, 스프링, 베어링 등으로 구성) -(풀리)동력전달을위해로프를걸어회전시키는바퀴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72류, 제73류의 철강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플라이휠이나 풀리의 몸체를 압연, 단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342	8501.10-1000	직류 전동기	<제외대상> -롤러등이결합된 컨베이어벨트용 전동기(제8431호) -전자식의진동전동기(제8479호) -원동기가부착된 발전기(제8502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등과 같은 전동기의 구성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우징 등 일부 구성요소가 불완전 하지만 전동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라면	

					제외)	
343	8505.19-1000	전자석, 영구자석(산화철의것)	자성을 가진 전자석과 영구자석 <제외대상> -가루형태의자성페라이트(제3824호) -의료용으로설계된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제2821호의 산화철 등을 주 원재료로 성형, 소결공정을 거쳐 생산	
344	8505.19-9000	전자석, 영구자석(금속으로 만든 것과 산화철의 것 제외)	자성을 가진 전자석과 영구자석 <제외대상> -가루형태의자성페라이트(제3824호) -의료용으로설계된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제2821호의 산화철 등을 주 원재료로 성형, 소결공정을 거쳐 생산	
345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납을(-)극, 이산화납을(+), 황산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만든 엔진 시동용 축전지 <제외대상> -수명이끝난축전지와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납 등을 도포하여 양극판, 음극판을 만들어 전조에 격리판, 단자 등을 조립하여 생산	
346	8507.60-2000	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용)	<제외대상> -1차전지(제8506호) -수명이끝난축전지와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양극재(리튬코발트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제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347	8507.60-3000	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저장장치용)	<제외대상> -1차전지(제8506호) -수명이끝난축전지와웨이스트(제854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양극재(리튬코발트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제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348	8507.60-9000	그 밖의 리튬이온 축전지	<제외대상> -1차전지(제8506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양극재(리튬코발트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

			-수명이끝난축전지와웨이스트(제8548호)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제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팩	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제외
349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연산(鉛酸), 니켈-카드뮴,니켈-수소합금,리튬이온 축전지제외한그 밖의축전지 *전기를화학에너지로저장했다가 필요시전기로재생하는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양극재(리튬코발트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제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루미늄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제외
350	8514.40-9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가열기나 유전체에 교류 자기장을 발생시켜 유전체 속에서 열이 손실 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가열기	한-중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UAE CEPA	주요 부분품 및 각 구성요소를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제외
351	8544.49-2090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기전선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플라스틱 절연 전선(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통신용이 아닌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구리선(제7408호)을 압연 및 연선하여 제39류의 플라스틱재료로 절연하여 생산	이미 완성품이거나 블랭크 상태인 절연 전선을 공급받아 추가 절연, 코팅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352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배합 및 탈포, 사출, 건조, 커팅의 공정을 거쳐 생산 -또는원재료가플라스틱필름인경우프레스펀칭성형을통해생산	

353	9001.30-0000	콘택트렌즈	눈의 각막에 붙여 사용하는 렌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29류 수용성 폴리머 등을 몰드에 성형(molding)한 후 연마·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광학적 특성이 부여되는 성형(molding)·연마(polishing) 공정 필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354	9001.50-1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 <제외대상> -안경렌즈의블랭크(blanks)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29류 수용성 폴리머 등을 몰드에 성형(molding)·경화한 후 연마·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광학적 특성이 부여되는 성형(molding)·연마(polishing) 공정 필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355	9001.90-1000	프리즘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제외대상> -광학적으로연마되지않은유리거울(제7007호) -도로·교통표지판용유리(제7014호) -안경용·시계용유리(제7015호) -램프나조명기구용반사경등(제9405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유리나 석영을 설계된 굴절률과 반사각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성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356	9001.90-3000	그 밖의 렌즈(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콘택트 렌즈,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프리즘, 반사경 제외)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제외대상> -광학적으로연마되지않은유리거울(제7007호) -도로·교통표지판용유리(제7014호) -안경용·시계용유리(제7015호) -램프나조명기구용반사경등(제9405호)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유리나 석영을 설계된 굴절률과 반사각 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성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357	9004.10-9000	선글라스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외대상> 귀금속을사용한 것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사출(또는 비금속 프레스 등), 렌즈가공, 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선글라스의 구성품(부분품)을 단순 조립하여 만든 경우 적용 제외
358	9603.21-0000	칫솔	칫솔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플라스틱 일차제품 사출·식모·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사출및식모공정 국내수행필수	
359	9603.29-0000	기타 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	솔(brush)로 모발을 손질하기 미용기구 등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제39류 플라스틱 등 일차제품을 용해(melting)·사출하여 손잡이 등의 구성 부품을 만들고, 브러시(brush) 등을 삽입하여 생산-사출 등의 성형(molding) 공정 및 브러시(brush) 삽입 공정 필수	구성 부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
360	9616.20-0000	화장용 스펀지	화장품 내용물을 묻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퍼프임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주요 원재료를 세척 및 향균처리 후 건조 시키고 원단접착 및 가압·재단 작업을 통해 제조	

[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이스라엘과의 협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별표 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 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통상 관련분야(경제, 경영, 무역, 법학)에 대한 연구논문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수입신고번호			
2.수입신고 수리일자			
3.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4.신청의 종류	X, X, X (U:정정, D:란 삭제, I:란 추가) ※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5. 정정신청 일자	
6.정정신청사유			

7.란 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란 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승인번호	

위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 성 예
1.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12345-16-678901M
2.수입신고수리일자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3.수입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신청의 종류	○ 인증요건 해당란에 "√ "를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작성 예시
	- 란 사항 정정인 경우: - 란 삭제인 경우: - 란 추가인 경우: - 란 사항 정정 및 란 추가인 경우:	- U, X, X - X, D, X - X, X, I - U, X, I
5. 신청일자	○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6. 정정신청 사유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7. 란 사항 변경내역

○ 란 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내역을 기재합니다.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0IN200603010001	SCC0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

신청인	현지확인예정통보 문서번호	접수일
	상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Address)	
연기(희망)기한	(yyyy/mm/dd ~ yyyy/mm/dd)	
신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Signature)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현지확인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소재지(주소)	
현지확인 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증명서발급 신청번호	증명서발급신청일자
	주소	
요청 사유		
확인할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상공회의소회장 (직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3. 원산지 소명서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승인)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 해당 [ ](인증번호:)		
4.신청 협정			

5.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신청일자		
9.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 ○ 상공회의소 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11.자유무역협정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작성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포괄확인기간	○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자유무역협정	○ 해당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명칭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털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 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세관장 귀 하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년 월 일(YYYY/MM/DD)

○ ○ 세 관 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직인(Seal)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을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연번 (S/N)	7.제품번호 (Goods No.)	8.품명 (Description of Good(s))	9.적용협정 (Name of FTA)	10.품목번호 (HS No.)	11.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세관장확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보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보완요구사유		
보완할 사항		
문의처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2.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 원산지신고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협정 부속서 4 특혜기준 참조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기재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수수료 없 음

자 르 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 인)

210㎜×297㎜[백상지 15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사전심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물품 (품명 및 HS번호)	신청내용	보정 기간	심사 결과	심사서 교부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Correction Request Form for Advance Ruling)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Application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보정기간 (Revision Period)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mm,dd,yyyy ~ mm,dd,yyyy (for 00 days))		
보정요구사유 (Reasons for Request)			
보정할 사항 (What to be Revised)			
문의처 (Person in Charge)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Customs officer 000, 00 division, 00 Main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Regarding a request for advance ruling, revision is request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직인 (seal)

000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사전심사서
(Notification of Advance Ruling)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승인일자(Approval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수출자 (Ex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심사 유형 (Type of Advance Rulings)	원산지(Country of Origin) [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 관세환급·감면(Duty Drawback/Reduction or Exemption) [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ariff Rate Quotas) [ ] 기타(Other) [ ]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결정내용 및 사유 (Content of Advance Ruling & Reasons)			

주의사항 (Notice)

수입신고 시 이 심사서의 품명·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When imports are declar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above should correspond to th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in import declaration and those of actual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sult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직인 (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
(Notification of Correction of Advance Rulings)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체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체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전심사 (Advance Rulings)	사전심사서 번호(Advance Ruling No.)	수출자(Exporter)
	사전심사서 발행일(Date of Receipt of Advance Rulings) (yyyy/mm/dd)	
	사전심사내용(Brief Details of Advance Rulings)	
	대상 품명(Description)	품목번호(HS No.)
변경 내용 (Contents of the Correction)	변경일자(Correction Date)	
	변경 전(Before Correction)	
	변경 후(After Correction)	
첨부서류 (Attachment)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Import clearance list to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applied). 2. 사전심사서 원본(Origin Advance Ruling).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 demonstrating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mention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paragraph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통보일(Date):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성명(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관 세 청 장 귀하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한 7일

사전심사서 변경 문서번호		통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구분	수입자 [ ] 대리인(관세사)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예신청 대상품목	대상 품명	품목번호(HS No.)
	수량	금액
유예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Attachment)	1.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 3.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 하

승인번호	

위와 같이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적용 유예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요청 사유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정요청자료 목록	1. _____(총 페이지수_____) 2. _____(총 페이지수_____) 3. _____(총 페이지수_____) 4. _____(총 페이지수_____) 5. _____(총 페이지수_____)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자 르 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위와 같이 비밀자료취급 지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상공회의소 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① 완제품 내역

품명 및 품목번호(HS6단위)	
모델명	
적용협정	

② 재료 내역

일련번호	품명 (재료명)	품목번호 (HS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	가격 (원)	공급처 (생산자)	입증서류
1	○○○○○	000000	KR	2	1,000,000	2,000,000	□□전자	원산지확인서
2	△△△△△	000000	미상	1	500,000	500,000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완제품 가격(원)		합계 (원)	역내산 재료비	
			비역내산 재료비	

작 성 자 : (서명)
상 호 :
작성일자 :

※ 지원파일형식: PDF, EXCE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